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6
----------	-----

2014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4. 10.31.
2. 제안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14. 12. 8.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14. 12.10.)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종결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14. 12. 10.)
 - 원안가결

Ⅱ . 제안설명 요지(기획조정실장 김재금)

1.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사유 및 주요내용

○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3.1% 증가한 7조 6,727억 원으로,

○ 추경예산 편성 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13년도 교부금 및 전입금 결손으로 인한 재정부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으로 2,613억원을 절감하여 1,589억 원의 세입결손을 보전하고 부족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 확보를 위해 세출예산 1,024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음

둘째, 2015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지방채 상황에 따른 재정충격을 완화하고 이자부담이 큰 지방채를 저이율의 지방채로 차환하고자 1,83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함

셋째,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된 목적지정 지원금 등 우선확정 사용분 2,089억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음

2. 세입예산 증감내역

○ 자체재원 1,589억원 감소와 목적지정 지원금 3,925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 보통교부금과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7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감소내역은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139억원, 2013년도 전입금, 교부금, 이월금 등 순세계 잉여금 1,615억 원, 교육부 지방교육채 발행승인액 313억원임

-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지원금은 2,089억원이며, 지방교육채 차환금으로 1,835억 원을 편성하였음

3. 세출예산 증감내역

○ 먼저, 세출예산 절감에 대해 말씀드리면,

- 초과근무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인건비 절감, 기관운영비 8.7% 절감, 학교운영비, 적정교육비의 95.5% 적용, 교육사업비는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평균 15% 절감, 학교신설, 계속사업을 제외한 시설사업비 70% 절감 등 총 2,61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음

○ 세출예산 추가소요 증액분은

-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부족분 392억원, 교원연구비 129억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비 14억원, 공립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283억원, 지방채 이자 상환 24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8억원 등 인건비와 필수경비 총 1,024억원을 편성하였음
- 용도가 지정된 목적지원금 2,089억원은 교육사업비 등 4개 분야에 우선확정, 집행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음

4. 명시이월사업

○ 2014년 본예산 사업 중 3개 사업에 대해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시키고자 함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업 1억 7천 5백만원과 거여고 토지매입비 30억원, 수송초 증개축비 26억 8천만원, 총 58억 5천 5백만 원임

Ⅲ. 예산안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엄지운)

①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4년 11월11일 제출한 것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03조1) 및 「지방재정법」 제45조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는 바, 추경예산의 편성요건은 동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임

1)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2] 추경예산안의 개요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조 4,391억원 대비 3.1%, 2,336억원이 증액된 7조 6,727억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표 2-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안	본 예산	추경예산증감내역				
		증감액		자체재원	지방채	우선확정
		증감률				
7,672,729	7,439,129	233,600	3.1%	△ 158,850	183,529	208,921

- 2013년도 교육부 보통교부금 및 서울시 법정전입금 등 세입 결손으로 발생한 재정부족(△1,588억 5,000만원)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증액분(1,024억 5,900만원)을 세출예산 절감(2,613억 9백만원)을 통해 경정하고,
- 기발행한 지방채의 고금리 이자부담과 2015년도 원금 상환 도래에 따른 신규 지방채를 차환(1,835억 2,900만원)하며,
- 연도 중 용도지정 교부된 목적지정 지원금 우선확정 사용분(2,089억 2,100만원)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임

3] 세입분야 검토

1. 세입재원 규모

-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목적지정 지원금 2,089억 2,100만원과 자체재원 증액분 246억 7,900만원 등을 포함한 2,336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1〉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 규모

(단위 : 백만원, %)

추경재원 ①+②	목적지정지원금(우선확정)				자 체 재 원					
	①	중앙정부	자치단체	기타이전	②	보 통 교부금	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 수입	지 방 교육채	순세계 잉여금
233,600	208,921	158,162	44,676	6,083	24,679	△107,850	155,778	△13,944	152,201	△161,506
(100.0)	(89.4)	(67.7)	(19.1)	(2.6)	(10.6)	(△46.2)	(66.7)	(△6.0)	(65.2)	(△69.1)

- **목적지정지원금** 2,089억 2,100만원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우선확정된 것으로서 추경재원 2,336억원의 89.4%를 차지하며,
- **자체재원**은 추경재원의 10.6%로서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증가(1,557억 7,800만원, 66.7%)하고 지방교육채 발행(1,522억 1백만원, 65.2%) 등의 사유로 246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표 3-2〉 세입예산 자원별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본예산	증 감 내 역			
			증 감 액		자체재원	우선확정
				증감률		
합 계	7,672,729	7,439,129	233,600	3.1	24,679	208,921
이전수입	7,132,074	6,875,225	256,849	3.7	47,928	208,921
중앙정부이전수입	4,584,719	4,534,407	50,312	1.1	△107,850	158,162
자치단체이전수입	2,535,162	2,334,708	200,454	8.6	155,778	44,676
기타이전수입	12,193	6,110	6,083	99.6	0	6,083
자체수입	209,118	223,062	△13,944	△6.3	△13,944	0
지방교육채	243,043	90,842	152,201	167.5	152,201	0
전년도이월금	88,494	250,000	△161,506	△64.6	△161,506	0

2. 세입자원별 증감

(1) 이전수입 증감

1)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본예산(4조 5,344억원) 보다 1.1%, 503억 1,200만원(1.1%)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표 3-3〉 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B)	증 감 액	
			C=(A-B)	증감률(C/B)
합 계	4,584,719	4,534,407	50,312	1.1
보통교부금	4,426,557	4,534,407	△107,850	△2.4
특별교부금	139,209	0	139,209	순증
국고보조금	18,953	0	18,953	순증

※ 전체 세입 예산에 대한 비율로 표시

-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의거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 자원인 바

〈표 3-4〉 2013~2014 보통교부금 확정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년도				2013년도			
추가경정 예 산 안	추경증감		본예산 (예정교부액)	추가경정 예 산 안	추경증감		본예산
	확정교부 증(감)액분	전년도 정산분			확정교부 증(감)액분	전년도 정산분	
4,426,557	△107,850		4,534,407	4,631,683	55,450		4,576,233

- 금번 추경에 반영된 보통교부금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교부예정액 4조 5,344억 700만원 보다 △1,078억 5,000만원이 감액(△2.4%)된 것으로, 「지방재정교부금법 제7조」³⁾ 및 「동법 시행령」⁴⁾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의 정산과정에서 감액된 것으로

3) 지방재정교부금법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예상액중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 때에 정산하며, 그 밖의 수입예상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판단됨5)

〈표 3-5〉 2014 보통교부금 확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정항목	확정교부액 (A)	예정교부액 (B)	증감액 (A-B)	주요증감사유
합 계		4,426,557	4,534,407	△107,850	
기준재정 수 요 액 (A)	소 계	7,417,958	7,329,262	88,696	
	1. 교직원인건비	4,991,232	4,999,948	△8,716	o교원정원감소:△86명
	2. 학교·교육과정운영비	974,109	955,526	18,583	o단위경비 단가 증액
	3. 교육행정비	130,883	130,883	0	
	4. 교육복지지원비	103,947	82,250	21,697	o교부기준개선: 학교수⇒학생수
	5. 학교시설비	376,201	319,958	56,243	o시설비 전국 자원 2,500억원 증액
	6. 유아교육비	595,510	602,312	△6,802	o'12년어린이집보육료 정산:△68억원
	7. 방과후학교사업비	147,516	147,516	0	
	8. 재정결함보전	50,963	45,744	5,219	o지방교육채 상환금액 증액 교부
	9. 학교학금통폐합 지원	15,640	15,640	0	
	10. 학교신설민관협력 확대	240	240	0	
	11. 자사고관련 일반고 지원	25,000	25,000	0	
	12.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4,226	4,245	△19	
	13. 고교학업중단학생 비율	2,491	0	2,491	o확정교부시 산정항목 추가
	14. 특성 학교등학교 개편 지원	0	0	0	
기준재정 수 입 액 (B)	소계	2,990,428	2,793,882	196,546	
	1. 지방세 등 법정 전입금	2,537,823	2,428,633	109,190	o'11년 취득세 감면 보전분 정산
	2. 수업료 및 입학금 수입	355,097	355,096	0	
	3.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0,151	10,152	△1	
4. 지방소비세 확대분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	87,357	0	87,357	o지방세법 개정으로신설	
감사결과반영(C)		△973	△973	0	

- 5) · 기준재정수요액 감소 : 교원정원 감소(△86명)로 교직원인건비 소요액 △87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고, 2012년도 어린이집보육료 정산으로 유아교육비 △68억원이 감소
- 기준재정수입액 증가 : 2012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전출받은 '2011년도 취득세 감면보전금(985억)'을 비롯한 지방세 등 법정전입금 정산으로 1,091억 9,000만원이 계상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소비세확대분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873억 5,700만원이 추가적으로 계상됨으로써 당초 예정 교부액 4조 5,344억원 보다 △1,078억 5,000만원이 감액된 것임

- **특별교부금**은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182억 6,300만원 등 국가시책사업 추진과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현안수요 해소를 위해 59개 사업에 1,392억 900만원이 추경 성립전 우선확정된 것이며,
- **국고보조금**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사업 162억 1,500만원 등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11개 사업에 189억 5,300만원이 우선확정되어 금번 추경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2) 자치단체이전수입 증액

- 자치단체이전수입은 2조 5,351억 6,200만원으로 본예산 2조 3,347억원 대비 2,004억 5,400만원(8.6%)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표 3-6〉 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본예산 (B)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사유
합 계	2,535,162	2,334,708	200,454	8.6	
법정이전수입	2,486,309	2,330,531	155,778	6.7	
지방세 소계	2,468,524	2,312,746	155,778	6.7	
시 도 세	971,261	936,801	34,460	3.7	'13년 정산금 및 취득세보 전분 정산금
지방교육세	1,162,440	1,128,479	33,961	3.0	
담배소비세	247,466	247,466	0	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 전 금	87,357	0	87,357	100.0	지방소비세 확대분 중 교부금 보전금
학교용지부담금	17,785	17,785	0	0	
비법정이전수입	48,853	4,177	44,676	1069.6	
광역자치단체전입금	42,352	4,177	38,175	913.6	서울시 교육 지원사업
기초자치단체전입금	6,501	0	6,501	100.0	복합화시설 및 기타사업

○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6)에 의거 서울시로부터 교육청에 이전되는 **법정이전수입**은 본예산 2조 3,127억 4,600만원 대비 6.7%, 1,557억 7,800만원이 증액된 2조 4,685억 2,400만원으로

- 이는 지난 2014년도 제1회 서울시 추경예산을 통하여 2013년도 지방세 및 지방교육세 정산금 684억 2,100만원과 지방소비세법 개정(2013.12.26.)에 따른 지방소비세 확대분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873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표 3-7〉 지방세 및 지방교육세 정산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내 역	금 액
합 계		68,421
지 방 세	소 계	34,460
	▶ '13년도 현년도 시세정산금 ⁷⁾	5,497
	▶ '13년도 전년도 시세정산금 ⁸⁾	13,420
	▶ 취득세 정부보전분 정산 ⁹⁾	15,543
지방교육세	소 계	33,961
	▶ '13년도 현년도 시세정산금	△3,277
	▶ '13년도 전년도 시세정산금	21,695
	▶ 취득세 정부보전분 정산	15,543

6)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7) '13년 현년도 시세정산금 : '13년도에 부과되고, '13년도에 징수되었으나 정산되지 않은 전출금

8) '13년 전년도 시세정산금 : '13년도 이전에 부과되고 '13년도에 징수되었으나 정산되지 않은 전출금

9) 취득세 정부보전분 : '11년 이후 정부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줄어든 지방교육세 등을 지방으로 보전중임

- **비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제7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전입금으로 금번 추경에 446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화장실 개선사업(가고싶은 화장실 만들기) 등 교육지원사업으로 18건, 381억 7,500만원이 전입되어 증액 편성된 것이며,
-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관내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교육청으로 직접 전입된 학교복합화시설, 학교 BTL 원금 및 이자 지원분, 영어원어민 인건비 및 제 경비, 도서관 평생학습프로그램 등의 사업예산이 우선확정 되어 65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3)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은 민간이전 수입 및 자치단체간 이전수입으로 마포구 용강 2·3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지원금(염리초등학교 교실 증축비), 한국정보화진흥원 지원금, 도서관협회 지원금 및 전국연합 학력평가실시 경비 등이 우선확정되어 60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2) 자체수입 감액

- **자체수입**은 본예산(2,230억원) 보다 $\Delta 6.3\%$, $\Delta 139$ 억 4,400만원 감액된 2,091억 1,800만원이 편성요청 된 바,
- **예금이자**의 경우 기정예산(119억 5,000만원) 대비 $\Delta 66.5\%$, $\Delta 79$ 억 5,000만원이 감액된 40억으로 조정 요청한 것으로, 이는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2013년도 서울시전입금 결손, 2014년도 보통교부금의 감액조정 및 지연 교부 등으로 자금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인건비, 누리과정지원금, 무상급식비 등 대규모 예산집행으로 인해 일정 규모의 평균잔고유지가 곤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됨
- **기타수입**은 당초 매년 4월 경 반납을 받던 공·사립 각급학교 목적사업비 집행잔액(10만원 이상)을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¹⁰⁾에 따라 당초 4월에서 출납폐쇄 종료직전인 2월에 반납 받게 됨에 따라 2014년도 기타수입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확인됨

10) 1.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절차의 문제점

학교회계전출금의 예산교부액 대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당 회계연도 집행잔액의 반납이 출납폐쇄기간까지 이뤄지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선기관의 회계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표 3-8〉 자체수입 추경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본 예 산	증 감 액		내 역
				비율	
합 계	209,118	223,062	△13,944	△6.3	
교수학습활동수입	145,004	145,000	4	0	도서관 문화교실 강사료 (수익자부담비)
행정활동수입	5,432	5,432	0	0	
자산수입	40,464	40,464	0	0	
이자수입	4,000	11,950	△7,950	△66.5	예금이자 감소분
금융자산회수	30	30	0	0	
기타수입	14,188	20,186	△5,998	△29.7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반납액 감소('13년 반납액을 당초 4월 반납 예정 → 2월에 반납 받음) - '14년 기타수입은 감소

(3) 지방교육채 차환

□ 지방교육채의 경우, 본예산 편성액(908억 4,200만원) 보다 1.6배, 1,522억 100만원 증액된 2,430억 4,300만원을 추가 경정예산으로 편성 요청한 것으로,

○ 이는 교육부 지방채 발행승인액 감소분 △313억 2,800만원¹¹⁾ 과, 지방채 차환금 1,835억 2,900만원 등을 경정한 결과, 당초보다 1,522억 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방채 현재액에 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검토됨

11) 2014년도 보통교부금 교부확정시 '공립유치원 및 학교신설·이전·개축·증설 등 학교시설비 충당'을 위해 교육부가 기승인 하였던 지방교육채 908억 4,200만원 중 313억 2,800만원을 정산하고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액을 595억 1,400만원으로 확정통보함(교육부,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안 통보", 2014. 4.)

○ **지방채 차환**은 지난 2009년도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으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연4.85%(고정금리)로 차입한 2,536억 3,200만원 중 2014년도 현재 상환잔액 1,801억 3,900만원을 저금리(3.18%) 지방채로 차환하는 것¹²⁾으로, 차환될 경우, 원금상환 시기도 당초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궁극적으로는 교육부가 지방채를 상환한다고 하여도, 매년 한정된 세출재원을 고려할 때 이자 및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다소나마 감소될 것으로 사료됨

〈표 3-9〉 차환대상 지방채 및 차환 내역

(단위 : 백만원)

발행연도	용도	발행금액 (금리)	기상환액	잔 액	차환대상액 (금리)	비 고
2009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253,632 (4.85%)	73,493	180,139	183,529 (3.18%)	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0.5%) 등 3,390백만원 포함

〈표 3-10〉 지방채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승인액	상환방법	상환재원	지 방 채 발행(예정)일	이율 (변동)	발 행 기준액	비 고
합 계	373,393					373,393	
학교신설 (‘13)	131,082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2016~2018)	국가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14.2.28	3.62	131,082	
학교신설 (‘14)	59,514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2020~2029)	국가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14.9.19	3.18	59,514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183,529	5년 거치 10년 (2020~2029)	국가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14.12.	3.18	183,529	지방채 차환 추경 신청

12) 교육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2009년 발생) 조기상환(차환)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생관련 신청서 제출” (지방교육재정과-6444, 2014.10.28.)

(4) 순세계잉여금 감액

- 금번 추경에 편성 요청된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이월금)**은 884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편성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2,500억원으로 추계·편성하였으나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결과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884억 9,400만원이 발생되어 당초 보다 $\Delta 64.6\%$, $\Delta 1,615$ 억 600만원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 이는 세수결손으로 인한 2013회계연도 중앙정부 교부금 $\Delta 292$ 억 3,200만원 결손, 2013회계연도 서울시 전입금 $\Delta 814$ 억 500만원 결손 등 이전수입의 결손이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직결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013회계연도 이월금도 당초 예상보다(1,393억 6,300만원 \rightarrow 884억 9,400만원) $\Delta 508$ 억 6,900만원이 감소한 바, 이전수입의 결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을 2,500억원으로 추계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은 결산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한 결과로 사료됨
- 따라서 향후에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세입전망을 사전에 예측하여 결손에 대비하고, 결산 전망도 신중히 추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1〉 순세계잉여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추경예산안 증감액(순증) (D)	추경예산 반영비율 (C/A)	추경(순증) 비율 (C/D)
	합 계 (A=B+C)	본예산 반영액(B)	추 경 반영액(C)			
2014년	88,494	250,000	$\Delta 161,506$	232,867	$\Delta 182.5$	$\Delta 69.4$
2013년	304,384	150,000	154,384	433,747	50.7	35.6
2012년	223,622	49,864	173,758	546,373	77.7	31.8

〈표 3-12〉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 산 안		본 예 산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증감률(C/B)
합 계	7,672,729	100.0	7,439,129	100.0	233,600	3.1
이 전 수 입	7,132,074	93.0	6,875,225	92.5	256,849	3.7
중양정부이전수입	4,584,719	59.8	4,534,407	61.0	50,312	1.1
보통교부금	4,426,557	57.7	4,534,407	61.0	△107,850	△2.4
특별교부금	139,209	1.8	0	0	139,209	순증
국고보조금	18,953	0.2	0	0	18,953	순증
자치단체이전수입	2,535,162	33.0	2,334,708	31.4	200,454	8.6
법정전입금	2,468,524	32.2	2,312,746	31.1	155,778	6.7
학교용지부담금	17,785	0.2	17,785	0.2	0	0
비법정전입금	48,853	0.6	4,177	0.1	44,676	1,069.6
기타이전수입	12,193	0.2	6,110	0.1	6,083	99.6
기타 지원금	12,193	0.2	6,110	0.1	6,083	99.6
자 체 수 입	209,118	2.7	223,062	3.0	△13,944	△6.3
교수학습활동수입	145,004	1.9	145,000	1.9	4	0.0
행정활동수입	5,432	0.1	5,432	0.1	0	0
자산수입	40,464	0.5	40,464	0.5	0	0
이자수입	4,000	0.1	11,950	0.2	△7,950	△66.5
금융자산회수	30	0.0	30	0.0	0	0
기타수입	14,188	0.2	20,186	0.3	△5,998	△29.7
지방교육채	243,043	3.2	90,842	1.2	152,201	167.5
전년도이월금	88,494	1.1	250,000	3.3	△161,506	△64.6

※ 전체 세입 예산에 대한 비율로 표시

4] 세출분야 검토

1. 총괄

-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은 본예산 7조 4,391억 2,900만원 보다 2,336억원(3.1%) 증액한 7조 6,727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된 것이나
- **인건비**는 사립학교인건비 재정결함지원 부족분 392억 2,100만원을 증액하고 공무원인건비는 △227억 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본예산(4조 8,080억 9,600만원) 보다 164억 4,100만원(0.3%) 증액된 4조 8,245억 3,7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고,
- **경상비**는 본예산(6,990억 5,100만원) 보다 △249억 9,500만원 (△3.6%) 감소된 6,740억 5,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공립 학교 운영비 △248억 5,600만원과 기관운영비 △35억 6,300 만원을 감액한 것임
- **교육사업비**는 자체절감과 정책사업 폐지 등에 따른 절감(△606억 8,200만원)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정 지원금 우선확정 사용분이 증가되어(1,546억 6,800만원) 본예산(1조 5,347억 7,600만원) 보다 939억 8,900만원(6.1%) 증액된 1조 6,287억 6,200만원 으로 편성 요청하였음
- **시설사업비**는 본예산 2,674억 1,400만원 보다 △375억 700만원 (△14.0%) 감소한 2,290억 700만원으로서, 우선확정 증액분

525억 7,400만원을 제외하면 자체예산 감액이 △900억 8,1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학교신증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모든 시설사업비가 감액된 것임

- **지방채 및 BTL 상환**은 지방채 이자상환금 23억 9,200¹³⁾과 차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분 1,835억 2,900만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편성액(1,218억 8,700만원) 보다 1,856억 7,500만원(152.3%)을 증액한 3,075억 6,20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예비비**는 본예산과 동일함

13) 2013년 발행 '학교신설' 지방채 1,310억 8,2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표 4-1〉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본예산		증 감 내 역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자체재원	우선확정	
합 계		7,671,996	100.0	7,439,129	100.0	233,600	3.1	24,679	208,921	
인 건 비	공무원인건비	3,888,849	50.7	3,911,629	52.6	△22,780	△0.6	△22,780	-	
	사립학교인건비	935,688	12.2	896,467	12.1	39,221	4.4	39,221	-	
	계	4,824,537	62.9	4,808,096	64.7	16,441	0.3	16,441	-	
경 상 비	기관운영비	37,272	0.5	40,835	0.5	△3,563	△8.7	△3,563	-	
	공립학교운영비	573,106	7.5	597,962		△24,856	△4.2	△24,856	-	
	사립학교운영비	63,678	0.8	60,254		3,424	5.7	2,724	700	
	계	674,056	8.8	699,051	9.4	△24,995	△3.6	△25,695	700	
사 업 비	교육사업비	1,628,762	21.2	1,534,776	20.6	93,986	6.1	△60,682	154,668	
	시설사업비	학 교 신 증 설	110,923	1.4	117,209		△6,286	△5.4	△7,278	992
		일반시설	98,858	1.3	128,539		△29,681	△23.1	△71,335	41,654
		급식시설	20,126	0.3	21,666		△1,540	△7.1	△11,468	9,928
		소계	1,838,543	3.0	1,780,524		△37,507	△14.0	△90,081	52,574
	계	1,858,669	24.2	1,802,190	24.2	56,479	3.1	△150,763	207,242	
지방채 및 BTL 상환	지방채상환	194,814	2.5	8,893	0.1	185,921	2,090.7	185,921	-	
	BTL상환	112,748	1.5	112,994	1.5	△246	△0.2	△1,225	979	
	계	307,562	4.0	121,887	1.6	185,675	152.3	184,696	979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7,905	0.1	7,905	0.1	0	0.0	-	-	
	계	7,905	0.1	7,905	0.1	0	0.0	24,679	208,921	

2. 세출 예산 감액 관련

□ 2013년도 서울시전입금, 2014년도 교부금 감소 등 교육청 재정 여건 변화로 ‘세출예산 절감 운영계획¹⁴⁾’ 을 수립하여 본예산 대비 △3.5%, △2,613억 900만원¹⁵⁾을 감액편성한 것임

○ 동 재원은 금번 추경을 통해 2014년도 세입결손 결손액 1,588억 5,000만원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추가소요액 1,024억 5,9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하는 것임

〈표 4-2〉 2014. 교특회계 세출예산 절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본예산	절 감 액			실행예산액	절감율
		부동의예산액	자체절감액	소 계		
합 계	7,439,129	△47,000	△214,309	△261,309	7,177,820	△3.5
인 건 비	4,808,096	-	△22,780	△22,780	4,785,316	△0.5
기관운영비	40,835	△68	△3,499	△3,567	37,268	△8.7
학교운영비	658,216	△4,007	△30,986	△34,993	623,223	△5.3
교육사업비	1,534,776	△6,668	△96,252	△102,920	1,431,856	△6.7
시설사업비	267,414	△36,257	△59,567	△95,824	171,590	△35.8
지방교육채 및 BTL	121,887	-	△1,225	△1,225	120,662	△1.0
예 비 비	7,905	-	-	-	7,905	△0.0

14) 2014 교특회계 세출예산 절감 운영계획 알림(예산담당관-487, 2014. 1.21.)

15) 2014년도 본예산액 7조4,391억 2,900만원의 3.5%에 해당

- **기관운영비**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도서관의 운영비 및 여비 등을 △8.7% 절감한 것이며, **학교운영비**의 경우, 각급 학교의 적정교육비를 일률적으로 △4.5% 감액 조정하는 등 2014년도 본 예산액(6,582억 1,600만원) 보다 △5.3%, △349억 9,300만원을 절감한 것이라고 하나
 - 일률적인 학교운영비 감액 조정은 각급 학교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 학교운영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저해할 수도 있어 학교운영비 감액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사업비**는 누리과정, 무상급식, 교과서지원 등 고정비용 사업을 제외한 전체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1조 5,347억 7,500만원)의 △6.7%인 △1,029억 2,0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임
 - 특히, 교육청 자체검토¹⁶⁾를 통하여 교육효과가 낮을 것으로 검토되는 11개 세부사업을 폐지하고 △20억을 감액한 바,
 - 학교생활교육과 소관 **대안교육운영지원**¹⁷⁾의 ‘위탁형 대안학급 설치’ 사업은 2014년도 본예산에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타고 학생 참여의 비효율, 학부모의 반발 등으로 교육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2014년도 1월에 사업을 전면 폐지한 바, 일선학교의 여건과 교육적 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한 사례로 판단됨

16) ■ 2014 교특회계 세출예산 절감 운영계획 알림(예산담당관-487, 2014. 1.21)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절감 적극 이행(예산담당관-3670, 2014. 4.22.)

17) 주요사업 설명자료 P.120

-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학습운영지원**¹⁸⁾ ‘서울평생학습축제’는 예산상의 이유로 행사성 경비를 폐지하기로 하여 예산액 4억 7,400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2014년도에 신규 편성된 **체육대회지원**¹⁹⁾ ‘교육감배 중학교 2학년 건강달리기 대회’(1,700만원)도 같은 이유로 예산편성 후 폐지된 사업으로 검토됨

〈표 4-3〉 교육사업비 중 정책 폐지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부 사 업	세 부 내 역	금 액	비 고		
합 계			△1,995			
기초 교육 정책 지원	소 계		△341			
	교육과정정책과	교육과정운영	독도교육활성화지원	△121		
	초 등 교 육 과	방과후학교운영	사교육비경감대책추진 (선행학습추방홍보)	△43		
	중 등 교 육 과	스마트교육지원	스마트교육활성화 (창의적체험활동교재개발)	△16		
	교 원 정 책 과	교원연수지원	초·중등 신규교사 연수	△161		
평생 교육 정책 지원	소 계		△1,654			
	평 생 교 육 과	평생학습운영지원	서울평생학습축제	△474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예방대책	학생생활지도지원	학생인권교육활성화 (학생인권실태조사)	△11	
			학교폭력예방대책	학교폭력예방교원연수	△9	
				CCTV 설치지원	△300	
		대안교육운영지원	대안교육위탁기관운영 (위탁형대안학급설치)	△620		
	진로직업교육과	진로진학교육	맞춤식진로교육 (학부모진로코치양성)	△200		
	체 육 건 강 청 소 년 과	체육대회지원	전국체육대회 (강화훈련전임코치연수)	△23		
교육감배대회 (중학교2학년건강달리기)			△17	2014년도 신규사업		

18) 주요사업 설명자료 P. 79

19) 주요사업 설명자료 P.156

○ **시설사업비**의 경우, 학교신·증설 및 계속사업을 제외한 신규 또는 추가재원 소요사업의 집행을 대부분 유보하여 본예산(2,674억 1,400만원)의 △35.8%, △958억 2,400만원을 감액하여 1,715억 9,0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인 바,

- 현재 교육청이 직면한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하나 기편성된 시설사업이 노후·위험 등 수요의 일부만이 반영된 사업임을 감안한다면 절감규모가 과도한 것으로 사료되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4〉 시설사업비 세출예산 절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2014년도 본예산액(A)	절감액(B)	실행예산액 (C=A-B)	절감율 (D=B/A)
합 계	267,414	△95,824	171,590	△35.8
본청시설관리	115	△40	75	△34.8
지역교육청시설관리	2,008	△966	1,042	△48.1
직속기관시설관리	3,110	△2,092	1,018	△67.3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10,269	△66,986	43,283	△60.7
학교시설증개축	13,037	△6,224	6,813	△47.7
학교급식환경개선	21,666	△12,238	9,428	△56.5
학교신증설	117,209	△7,278	109,931	△6.2

- 2014년도 본예산의 50% 이상을 감액조정한 사업은 교육과정 정책과 소관 **독서논술교육활성화**사업 등 10개 사업에 이르는 바,
 - 본예산의 50% 이상을 감액하여 사업을 축소 운영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사업 규모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소요예산이 과다 산정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표 4-5〉 50% 이상 감액조정(절감)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번	주관부서	세부사업명	2014년도 본예산액(A)	절감액(B)	실행예산액 (C=A-B)	절감율
합 계			142,189	85,834	56,355	63.3
1	교육과정정책과	독서논술교육활성화	461	258	203	56.0
2	교육과정정책과	특색교육과정운영	1,938	1,292	646	66.7
3	교육시설과	직속기관시설관리	3,110	2,092	1,018	67.3
4	교육시설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10,269	66,986	43,283	60.7
5	중등교육과	스마트교육지원	447	294	153	65.8
6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1,400	775	625	55.4
7	체육건강청소년과	체육육성종목지원	386	222	164	57.5
8	체육건강청소년과	학교급식환경개선	21,666	12,238	9,428	56.5
9	체육건강청소년과	학교보건관리	2,507	1,673	834	66.7
10	총무과	행정서비스관리	5	4	1	80.0

3. 부동의예산액 감액 관련

-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부동의 예산액은 시설 사업비 등 4개 사업, 470억원으로, 서울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13.12.30.)에서 우리 의회가 의결한 것이나 「지방자치법」 제127조²⁰⁾를 근거로 교육감이 부동의 한 바 있음²¹⁾
- 금번 추경에서는 2014년도 세입결손 1,589억원과 세출추가 소요액 1,024억원 등 총 2,613억원의 재정부족 해소를 위해 동 부동의 예산 470억원을 ‘자체 세출예산 절감액 2,613억원’에 포함하여 전액 감액 조정하여줄 것을 요청한 것임

〈표 4-6〉 2014년도 의회증액예산(부동의) 및 세출예산 절감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인건비	기 관 운영비	학 교 운영비	교 육 사업비	시 설 사업비	지방교육채 및 BTL	합 계	비 고
절 감 예산액	22,780	3,567	34,993	102,920	95,824	1,225	261,309	
부동의 예산액	0	68	4,007	6,668	36,257	0	47,000	470억은 절감예산액 261,309백만원에 포함됨

- 동 예산액 470억원은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의 본질적인 시행취지와 사업의 계속성을 고려하여 교당 2,000여만원을 증액하고, 비정규직 등 소외계층에 대한 처우개선 경비와, 교육현장의 수요를 받

20)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21) 동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2014. 1. 21. 의안번호 1612번으로 재의요구하였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제7대 서울시의회 종료와 함께 폐기됨

영한 재난구조보강, 방수공사 등 노후된 학교시설개선 예산을 증액 조정한 것임에도,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세출예산 절감을 사유로 하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 중 해당부분을 감액 편성하려는 것은 '예산심의·확정'이라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보다 심도있는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세출예산 증액 관련

(1) 자체재원 증액

- 금번 추경에서 자체재원으로 증액된 사업은 33개 사업 1,024억 5,900만원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인건비, 교원연구비,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 비 등 인건비와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지방채 이자 상환 등 필수경비가 자체재원 증액사업으로 편성요청된 것임

1) 인건비

-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²²⁾(학교지원과)은 의무교육으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 중·특수학교와 공립학교 수준으로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 등 291개교에 교직원 인건비 및 법정 부담금 소요액 중 재정부족액을 지원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392억 2,100만원을 자체재원으로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22)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68

- 특히, 동 사업은 2014년도 본예산 심의시 세출재원의 한정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어 교육청의 인건비 편성 및 운용방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며 50억원을 삭감한 바 있으나, 교직원 성과상여금 등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인건비를 포함한 법정 의무적 경비'를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동 사안에 대한 증액편성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4-7〉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사업내역	본 예산			추경증감		추경예산안
		요구액 ①	감액 ②	확정액 ①-②	증감액	증감률	
인건비재정 결함지원	인건비재정 결함보조	901,467	△ 5,000	896,467	39,221	4.4	935,688

- 다만, **학교운영비지원**²³⁾(예산담당관)과 **운영비재정결함지원**²⁴⁾(학교지원과)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로 지급근거가 소멸되었던 공·사립 중학교 교사 '교원연구비'에 대하여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²⁵⁾에 따라 지급하고자 공립중학교 소요액 94억 100만원과 사립중학교 소요액 34억 6,000만원 등 128억 6,100만원을 증액

23) 주요사업설명자료 P.11

24) 주요사업설명자료 P.170

25)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용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14.4.29.]

편성 요청한 것이나, 공립 초·중학교 및 사립중학교의 학교운영비를 절감(△349억 9,400만원)하면서도 교원연구비를 편성하였다는 점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표 4-8〉 교원연구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본예산	추경 증 감					추경예산안
		소 계 (D=A+B+C)	증감률	증액 (A)	절감 (B)	우선확정 (C)	
계	658,216	△21,433		12,861	△34,994	700	636,783
학교운영비지원	597,962	△24,856	△4.2	9,401	△34,257	0	573,106
운영비재정 결합지원	60,254	3,423	5.7	3,460	△737	700	63,677

- **학교급식운영**²⁶⁾(체육건강청소년과)은 공립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부족분 268억원, 조리종사원 월급제 전환 인건비상승분 및 처우개선비²⁷⁾ 14억 7,800만원, 2013년도 친환경무상급식 서울시지원비 반환금 2억 8,500만원 등 총 285억 6,3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는 것임

〈표 4-9〉 학교급식운영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본예산	추경 증 감					추경예산안
		소 계 (D=A+B+C)	증감률	증액 (A)	절감 (B)	성립전 (C)	
무상급식	263,038	28,563		28,563			291,601

26) 사업설명서 P.154

27) 2014.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 계획(예산담당관-4136, 2014. 4.30.)

- 급여체계 개선 : 근무연수를 바탕으로 단일 보수체계를 반영한 보수표에 따라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합산하여 매월 지급
- 재정적 처우개선 : 장기근무 가산금, 자녀학비 보조수당(분기별 47만원 이내), 위험근무수당(조리사 및 조리원 대상 월 5만원)

- 공립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의 분담은 2013년도부터 교육청과 서울시에 이견이 있던 사항으로, 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도 급식경비에 해당하여 서울시가 조리종사원 인건비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는 조리종사원 인건비도 급식경비에 포함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나 무상급식 이전부터 교육청이 부담하던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새롭게 무상급식 단가에 포함시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2013년도에도 교육청이 추경을 통해 서울시 분담금 50%를 편성한 바, 금번 추경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립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소요액의 50%인 268억원 전액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교원인사관리**²⁸⁾(교원정책과)와 **학교도서관운영지원**²⁹⁾(교육과정정책과) 사업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14년도부터 급여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하고 장기근무가산금(3년 이상 근무자) 및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바³⁰⁾, 금번 추경에서 교무행정사 918명의 인건비 소요액 7억 3,200만원과 중학교 사서 320명의 인건비 소요액 7억 1,700만원 등 14억 4,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0〉 교무행정사·중학교 사서 처우개선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본예산	추경 증 감					추경예산안
		소 계 (D=A+B+C)	증감률	증액 (A)	절감 (B)	우선확정 (C)	
계	26,181	1,871	7.1	1,449	△150	573	28,053
교원인사관리	19,875	1,156	5.8	732	△149	573	21,031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6,306	715	11.3	717	△1	-	7,022

28) 주요사업설명자료 P. 88

29) 주요사업설명자료 P. 36

30) 2014.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 계획(예산담당관-4136, 2014. 4.30.)

2) 시설비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³¹⁾**(교육시설과)은 본예산 1,102억 6,900만원 대비 $\Delta 27.4\%$ (302억 6,300만원) 감소된 800억원으로 조정 요청한 바, 자체재원 증액은 19억 7,900만원임
- 2015. 2.28. 준공예정인 은로초(동작관악교육지원청) 노후교실 개축 공사 추가소요액 9억원과 화장실 리모델링 지원금 반납액 3억 2,200만원 등 2013년도 국고 및 광역자치단체 지원 6개 사업 정산 반납금 10억 7,900만원³²⁾ 등 19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 자체예산 절감($\Delta 669$ 억 8,600만원)에도 불구하고 필수경비만을 증액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표 4-13〉 시설사업비(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본예산	추 경 증 감					추경예산안
		소 계 (D=A+B+C)	증감률	증액 (A)	절 감 (B)	성립전 (C)	
학 교 시 설 교육환경개선	110,269	$\Delta 30,263$	$\Delta 27.4$	1,979	$\Delta 66,986$	34,744	80,006

31) 주요사업설명자료 P.176

32) 국고반납 : 공항소음피해학교 지원 42,000천원

광역자치단체 반납 :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 51,145천원, 위험시설 지원 431,650천원, 창호안전 시설 지원 198,039천원, 책걸상교체 지원 34,226천원, 화장실 리모델링 지원 321,923천원

3) 2013년도 불용사업 중 필수사업

- 자치구지원금 또는 특별교부금이 2013년도 12월말에 교부되어 우선확정되었으나 출납폐쇄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된 예산 중 금번 추경을 통해 증액 요청된 사업은 4개 사업, 36억 8,700만원임

〈표 4-11〉 2013년도 불용사업 중 필수사업 증액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소관	세 부 사 업	2013년도			2014년도 추경증감	내 역
		교부일	교부액	불용액		
합	계		5,182	3,745	3,687	
교 시 설 육 과	학교시설증개축	11.28	2,200	2,200	2,200	수송초복합화시설
초 교 육 등 과	문 화 예 술 교 육 활 성 화	12.20	1,465	1,465	1,465	-연극동아리(20교) 85,000천원 -학생뮤지컬(6교) 120,000천원 -학생연극회(17교) 170,000천원 -학생오케스트라(신규12교,기존50교) 1,090,000천원
교 육 과 정 책 과	독 서 논 술 교 육 활 성 화	12.20	15	15	15	-독서교육 콘텐츠 개발 10,000천원 -학교도서관 활용 교과연구회 지원(5교) 5,000천원
초 교 육 등 과	학 력 향 상 지 원	3.7	1,502	65	7	학습역량 진단검사 분담금

- **학교시설증개축**³³⁾(교육시설과)은 수송초 강당 겸 체육관을 교육청/서울시/강북구가 27:51:22대 비율로 대응투자하여 신설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 152억 1,300만원 중 설계비 22억원을 강북구로부터 2013.11.28. 교부받았으나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연도 중 집행이 불가하여 불용처리 한 바 있으나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것임

33) 주요사업설명자료 P.174

- **문화예술교육활성화**³⁴⁾(초등교육과)는 학생오케스트라, 뮤지컬 및 예술동아리 운영 초·중·고등학교 106개교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의 2014년도 신규추진 사업이나 특별교부금이 2013년 12월말에³⁵⁾ 교부됨으로써 계획수립 및 대상학교 선정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우선확정 후 곧바로 불용처분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바,
- 불용처리 후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금번과 같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늦게 이루어질 경우, 추경예산안 확정 후 곧바로 회계연도 마감으로 이어져 또다시 이월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회계연도말 교부사업에 대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대응투자 편성분

- **특성화고장학금 지원**³⁶⁾(직업진로교육과)은 2014년도 본예산 편성시 교육부와 교육청이 5:5로 대응투자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기로 한 사업이나, 2014. 5월에 교육부가 예산분담

34) 주요사업설명자료 P.56

35) 2013년 예술교육활성화사업 특별교부금(제4차) 교부 통지(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5462, 2013.12.20.)

36)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37

·특성화고 학비지원은 저소득층자녀(법정차상위 등), 한부모자녀 및 그 외 일반학생으로 구분하여 3가지 항목으로 지원

구 분	2014 예산소요액	2014. 지원 종류별 현황				비 고
		법정차상위 최저생계비 130%이하	한부모자녀	특성화고 장학금	계	
입학금	197,864	37,054	8,953	151,857	197,864	14,532명
수업료	58,006,676	11,425,752	2,545,597	44,035,327	58,006,676	41,984명
합 계	58,204,540	11,462,806	2,554,550	44,187,184	58,204,540	

비율을 교육부 3 : 교육청 7로 변경³⁷⁾함에 따라, 금번 추경에서 교육부 대응투자분 중 115억 4,600만원(특별교부금)과 대응투자 비율 변경에 따른 부족분 98억 9,800만원(자체재원), 총 214억 4,500만원을 증액편성 하고자 하는 것임

- 대응투자사업은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일정비율을 분담토록 하면서 사업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투자비율이 높지만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이르면 소요예산 전액을 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중도에 사업을 폐지할 수 없는 바, 대응투자가 또다른 세출 압박요인이 되어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사료됨

〈표 4-12〉 특성화고장학금 지원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본예산	추경 증 감					추경예산안
		소 계 (D=A+B+C)	증감률	증액 (A)	절감 (B)	성립전 (C)	
특성화고 무상교육비지원	35,048	28,563	61.2	9,899	0	11,546	56,493

37) 시·도교육청 직접교육담당관 협의회 자료(2014. 5.27.)

(2) 목적지정 지원금 성립전 우선확정 증액

-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이 예산 성립전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우선확정 사용된 목적지정 지원금은 98개 사업, 2,089억 2,1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증액요청한 것임

〈표 4-14〉 목적지정 지원금 재원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건)

재 원	건수	우 선 확 정 액
합 계	98	208,921
국고보조금	8	18,953
특별교부금	59	139,208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4	38,175
기초자치단체전입금	6	6,501
기타지원금	7	2,081
전입금	4	4,003

- 50억 이상 증액된 사업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12개 사업, 1,504억 6,800만원으로,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³⁸⁾**(교육시설과)의 경우 우장초(강서) 교사동 리모델링과 노량진초(동작관악) 구조보강 등을 위해 특별교부금 232억 5,600만원이 교부되어 우선확정한 집행한 것이며, 서울시 교육비지원(조례상전출금) 사업으로 화장실개선 103억 2,900만원, 책걸상 교체 11억 5,800만원 등 114억 8,700만원을 우선확정 집행하는 등 347억 4,000만원을 증액 요청하는 것임

38) 주요사업설명자료 P. 176

- **방과후학교운영**³⁹⁾(초등교육과)은 국책사업인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시설비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금 162억 1,500만원을 지원 받아 돌봄겸용교실 1,081실을 설치하고,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제 운영, 초등돌봄교실 강화, 중학교 방과후공부방 운영 등을 위해 특별교부금 36억 2,400만원을 우선확정 집행하는 등 198억 3,900만원을 증액요청하는 것임

- **교육과정운영**⁴⁰⁾(교육과정정책과)은 국가시책사업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를 위한 자유학기제 도입 연구학교 운영(중학교 150개교, 39억 2,200만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운영(3개 연구기관, 28억 9,000만원) 등을 추진하고, ‘고교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74억 7,800만원), 교육과정거점 학교운영 내실화(17억 4,000만원) 등에 총 183억 100만원을 우선확정 받아 집행하고 증액 요청한 것임

-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⁴¹⁾(중등교육과)은 영어원어민 교사 132명, 중국어원어민교사 40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1,000명을 배치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114억 9,500만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0억 3,600만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6억 5,700만원 등 총 161억 8,700만원을 우선확정 집행하고 증액요청한 것임

- **학교급식환경개선**⁴²⁾(체육청소년과)은 중원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을 위해 특별교부금 10억 5,200만원을 우선확정 집행하고,

39) 주요사업설명자료 P.53

40) 주요사업설명자료 P.25

41) 주요사업설명자료 P.81

42) 주요사업설명자료 P.160

각급학교의 노후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전입금(서울시 교육비지원사업) 88억 7,600만원을 우선확정 집행하고 증액요청 하는 것임

- 금번 추경에서는 목적지정 재원인 국고보조금 등 우선사용확정분이 2,089억 2,100만원으로 세입재원(2,336억원)의 89.4%에 이르고 있는 바,
 - 교육청 예산이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목적지정 경비의 증가는 교육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이는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일 수도 있어 국가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은 교육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15〉 목적지정 지원금 성립전 예산 우선확정사용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

재원	세 부 사업명	사업내역	본예산	추 경 증 감				추 경 예산안
				소 계 (D=A+B+C)	증액 (A)	절감 (B)	성립전 (C)	
합 계	합 계		312,041	65,355	13,467	△98,580	150,468	377,396
특별교부금/ 광역자치 단체전입금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	우장초교사동리모델링 노량진초구조보강 등	110,269	△30,263	1,979	△66,986	34,744	80,006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방 과 후 학교 운영	초등돌봄교실운영 사교육비경감추진	57,053	8,271	418	△11,986	19,839	65,324
특별교부금	교육 과정 운영	자유학기제운영, 고교경쟁력강화사업 등	895	17,895	21	△427	18,301	18,790
특별교부금	영어교사및 보조강사 운영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국제교류활성화	43,580	15,268	101	△1,020	16,187	58,848
특별교부금	특성 화 고 장학금지원	특성화고장학금지원	35,048	21,445	9,899	0	11,546	56,493
광역자치 단체전입금	학교 급식 환경 개선	노후급식시설개선	21,666	△1,540	770	△12,238	9,928	20,126
특별교부금	학교 체육 활성화지원	학교체육내실화, 물놀이안전교육 등	20,030	7,039	205	△1,576	8,410	27,069
특별교부금	진 로 진 학 교 육	초중등진로교육지원사업 창의인성교육강화 등	3,151	6,388	0	△611	6,999	9,539
광역자치 단체전입금	현 장 중 심 장 학 활 동 지 원	학습준비물지원	10,463	4,269	0	△2,359	6,628	14,732
특별교부금	체 육 대 회 지 원	학교체육내실화 학교체육활성화캠페인 등	3,792	5,829	0	△581	6,410	9,621
특별교부금	특성 화 고 취 업 역 량 강 화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학교경영및교수학습연구 대회 등	1,400	5,355	74	△775	6,056	6,755
특별교부금/ 광역자치 단체전입금	학 력 평 가 관 리	대 학 입 학 전 형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등	4,694	5,399	0	△21	5,420	10,093

수 명시이월사업

- 금번 제1회 추경안 제출시 2014년도 사업 중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한 3개 사업, 58억 5,600만원에 대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한 것임

〈표 4-16〉 2014년도 명시이월 승인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명시이월 요 구 액
세부사업	목			
합 계			6,450	5,856
학 교 신 설	토지매입비	학교신설(거여고)	3,000	3,000
학교시설증개축	시 설 비	학교시설증개축(수송초)	3,200	2,681
진 로 진 학 교 육	자치단체이전	2014년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250	175

○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비로서, 결산을 통해 사후적 통제가 가능한 사고이월에 비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므로 의회의 예산감시권이 존중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나,

- 사전절차 지연 또는 공정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다가 다음연도에 집행되지 못한 채 사고이월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업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학교신설(거여고)**는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 내 36학급 규모로 2016년 3월 개교하기위해 금년도 예산으로 토지매입비 30억원 및 건축비 22억 6,700만원 등 52억 6,700만원을 편성한 바, 토지매입비 30억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요청하는 것임
 - 이는 위례신도시 공동주택개발사업 지연에 따라 입주예정 세대 16,245세대 중 73.6%인 11,957세대가 2017년도 이후 학생배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 거여고 신설 예정부지를 점유중인 군부대 이전 시기가 2015년 상반기로 지연됨에 따라 학교신설사업의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개교시기를 2017년 3월로 조정하게 되자,
 - 토지매입비 30억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학교시설 증개축(수송초)**는 강북구 한천로 수송초등학교 내에 지하주차장, 학생식당, 체육관 설치 등 복합화사업을 추진하여 강북구 번1동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을 강북구청과 공동 추진⁴³⁾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편성된 30억 중 26억 8,1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임
 - 강북구 분담 사업비의 추경성립전 우선사용 신청 및 배정, 일상감사 시행, 조달청 계약시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반영 및 계

43) 연면적 9,000㎡, 사업내역 지하주차장, 급식실·식당, 정보도서관, 체육관
 총 공사소요액 152억 1,200만원(교육청 4,032백만원, 서울시 7,825백만원, 강북구 3,356백만원 분담)

약보완자료 제출 등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연도 내 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명시이월 요청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향후 대규모 공사 시행으로 인한 소음과 안전 등 학사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므로 사업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은 25개 자치구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25억 5,600만원을 우선확정 사용 집행한 것으로 종로, 강북, 관악 3개구의 센터 개소 추진이 지연되어 1억 7,5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승인 요청하는 것임

⑥ 추가경정 성인지 예산

-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성인지 예산은 총 32개 사업에 1,184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개 사업, 1,006억 1,100만원 대비 178억 6,900만원이 증감된 것임

〈표 4-17〉 추가경정 성인지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분류	사업개수	추경예산액(A)	본예산(B)	증감	
				(A-B)	증감률
합계	32개	118,480	100,611	17,869	17.8
여성정책추진사업	12개	16,093	14,854	1,239	8.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개	31,421	30,921	500	1.6
교육부지정사업	14개	70,966	54,837	16,130	29.4

- 사업분류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이 12개로 본예산 148억 5,400만원 대비 8.3% 증액한 16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6개로 본예산 309억 2,100만원 대비 1.6% 증액한 314억 2,100만원을,
 - 교육부 지정사업은 14개로서, 본예산 548억 3,700만원 대비 29.4% 증액한 709억 6,600만원으로 편성된 것임

〈표 4-18〉 세부사업별 성인지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사업명	추경예산액 (A)	본예산 (B)	증감 (C=A-B)	증감률 (C/B)
합 계		118,399	100,530	17,869	
교원연수지원	중등교원연수지원	1,019	1,551	△532	△34.3
영재교육운영	영재교육담당교원전문성신장	21	34	△13	△38.2
	과학교육활성화(특별교부금)	242	0	242	순증
영재교육원운영	영재학교운영	487	493	△6	△1.2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20,318	20,345	△27	△0.1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특별교부금)	11,200	0	11,200	순증
마이스터고운영지원	마이스터고지원	2,220	2,300	△80	△3.5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취업기능강화특성화교육성	500	1,200	△700	△58.3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특별교부금)	2,735	0	2,735	순증
진로진학교육	맞춤식진로교육	2,353	2,879	△526	△18.3
직업진로 교육과정운영	일반고교생직업교육과정 운영지원	1,544	1,876	△332	△17.7
수석교사제운영	수석교사제운영	1,491	1,497	△6	△0.4
창의인성교육운영	예술중점학교운영비지원	123	180	△57	△31.4
	예술교육활성화(특별교부금)	354	0	354	순증
유치원방과후 과정운영	에듀케어자원봉사단운영	3,335	3,381	△46	△1.3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스포츠강사지원	17,756	16,792	964	5.7
	학교체육내실화(특별교부금)	1,270	0	1,270	순증
체육육성증목지원	선진운동부육성	163	386	△223	△57.6
특수교육운영	방과후활동지원	5,186	5,186	0	0
특수교육복지지원	장애인식개선사업지원	480	560	△80	△14.3
평생학습운영지원	장애성인평생교육	469	492	△23	△4.5
학교폭력예방지원	학교안전망구축	9,838	10,804	△966	△8.9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확대	학교운영위원회	30	39	△9	△21.6
교직원단체관리	교원노사관리	167	212	△45	△20.7
학력향상지원	기초학력교원전문성신장	38	59	△21	△33.9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영어교사심화연수	192	350	△158	△45.1
	영어교사심화연수지원 (특별교부금)	560	0	560	순증
학생봉사활동지원	청소년단체활동지원	102	112	△10	△8.3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지원	23,347	27,689	△4,342	△15.7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화장실개선	10,329	1,873	8,456	451.5
도서관운영지원	독서문화및교육지원사업	530	240	290	121

IV. 심사결과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 소위원회 구성 : 구성하지 않음

3.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첨부 :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심사·의결 내역
1부. 끝.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 내역

(2014. 12. 10.)

□ 총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예결위심사·의결내역	증감금액
세 입	7,672,728,985	7,672,728,985	0
세 출	7,672,728,985	7,672,728,985	0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166
----------	-----

제출년월일 : 2014년 10월 3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출사유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는 것임

2.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추경예산(A)	2014년도 본예산(B)	비교증감	
				증감액(A-B)	비율(%)
총 규 모		7,672,729	7,439,129	233,600	3.1%
세 입	중앙정부이전수입	4,584,719	4,534,407	50,312	1.1%
	자치단체이전수입	2,535,162	2,334,708	200,454	8.6%
	기타이전수입	12,193	6,110	6,083	99.6%
	자체수입	209,118	223,062	△13,944	△6.3%
	지방교육채	243,043	90,842	152,201	167.5%
	이월금	88,494	250,000	△161,506	△64.6%
세 출	인건비	4,824,537	4,808,096	16,441	0.3%
	기관운영비	37,272	40,835	△3,563	△8.7%
	학교운영비	636,784	658,216	△21,432	△3.3%
	교육사업비	1,628,762	1,534,776	93,986	6.1%
	시설사업비	229,907	267,414	△37,507	△14.0%
	지방교육채및BTL	307,562	121,887	185,675	152.3%
	예비비	7,905	7,905	0	0.0%